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8.(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레 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23. 11. 17.
- 회부일 : 2023. 11. 20. (의안번호 : 23-127)

2.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관련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대상자 및 방법, 내용(안 제5조~제7조)
- 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과 지원결과 관리(안 제8조~제9조)
- 바. 비용환수(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3. 8. 24. ~ 9. 13.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관련 사항을
 - 안 제5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자 및 방법, 내용을
 -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과 지원결과 관리를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에서는 비용환수를 규정하는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취지
금번 조례안의 사업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4명, 2020년 14명, 2021년 17명, 2022년 17명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무연고 대상자는 마포구 관내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 사망자이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체인수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531	583	814	1,102
마포구	4	14	17	17

- 다음으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수는 2020년 9,292명에서 2022년 9,81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독거노인은 2020년 2,622명에서 2022년 3,15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포구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20			2021			2022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비율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비율	독거인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비율
인구수	9,292	2,622	29	9,716	3,059	32	9,810	3,152	33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고, 마칠 때까지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망 후 본인의 시신에 대해 갖는 권리가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무연고사망자, 저소득층 등의 ‘죽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의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때 재정적 어려움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한 연고자가 있다면 이들이 최소한 망자와 이별할 수 있도록 장례가 보장되어야 하고, 장례할 사람이 없다면 공공부문에서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오래된 명언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사망 시에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후를 평안하게 보내드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휴면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망인의 사후가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 다만, 금번 조례안을 통하여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특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공부문에게 취약계층 장례 지원 책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경제적 지원과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장례를 치러 줄 인적자원이 없다면 실질적인 장례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종교단체나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요인이라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어르신동행과	김경숙 (8860)	이광재 (886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차재현
연락처	02-3153-8863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 ⑥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 12. 30.>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2.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흐름도

